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77
----------	-------

발의연월일 : 2025. 12. 5.

발 의 자 : 정혜경 · 손 술 · 전종덕
윤종오 · 최혁진 · 용혜인
김 윤 · 박지혜 · 이재강
이성윤 · 임미애 · 김준형
이주희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 등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은 법률상 교원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동일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야기하여 헌법상 단결권 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더군다나, 교원의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정당한 노조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전반적으로 많은 제약에 놓여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섭에 응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교섭 개시 자체가 지연되거나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그 이행이 실효적으로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협약 내용이 교육 규칙이나 정관, 학교 규칙의 제·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는 책임 주체의 역할이 법률상 분명하지 않아 합의 사항이 행정적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지속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법률상 교원에 포함하여 단결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교섭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도록 하며,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교원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교원의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당한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함(안 제3조 삭제).

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할 수 있는 사항에 교육정책을 포함하도

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결된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과 단체 교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지체 없이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시·도 교육감이 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 교섭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마. 단체협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교육 규칙, 정관, 학교 규칙의 제·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을 요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위임 사항에 대한 성실 이행을 요구하던 기존 조항을 삭제하여, 단체협약의 법적 실효성과 이행 책임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2항 삭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원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제2조제3호에”를 “제2조제3호·제4호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상에”를 “향상 및 교육정책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연합하여”를 “지체 없이 연합하여”로, “한다”를 “하고, 시·도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효력”을 “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조례·교육 규칙·정관·학교 규칙의 제·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개정 또는 편성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원</u> <u><삭제></u>
<u>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생략) ② <u>제2조제3호에</u>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2조제3호·제4호에</u>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 ----- -----

회적 지위 항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
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
한을 가진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
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
학교 설립·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
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
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생 략)

② ~ ⑨ (생 략)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
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
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
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항상
및 교육정책에-----

-----.

1. -----

-----지체 없이 연
합하여-----
하고, 시·도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7조(단체협약의 이행)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
교 설립·경영자는 제6조제1항
에-----
-내용이-----·교육 규
칙·정관·학교 규칙의 제·개
정-----예산의 편성을 요하
는 경우에는 제·개정 또는 편
성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

② <u>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u>	<u>야 한다.</u> <u><삭 제></u>
---	--